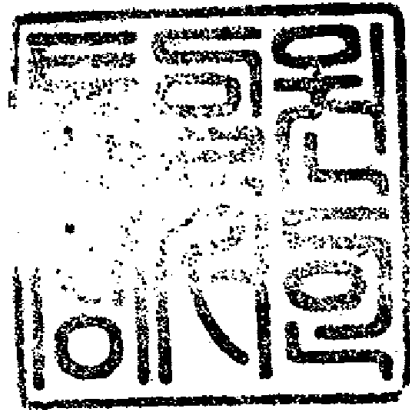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인권실태

권오덕
(통일원 정보분석실 분석관)



통일연수원

차 례

I. 서 론	3
II.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보호규정	8
1. 인권의 개념 / 8	
2. 국제인권보호규정 / 8	
가. 유엔헌장 / 9	
나. 세계인권선언 / 9	
다. 국제인권규약 / 10	
III.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12
1. 북한의 인권규정 / 12	
2. 주요 사례로 본 인권실태 / 20	
가. 기본적 권리 / 20	
1) 신체의 자유 / 2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22	
3) 거주·이전의 자유 / 25	
4) 정신적·사회적 활동에 관한 자유 / 27	
5) 법앞에 평등 / 31	
6) 청구권적 기본권 / 36	

- 나. 정치적 권리 / 38
 - 1) 언론·출판의 자유 / 38
 - 2) 집회·결사의 자유 / 41
 - 3) 참정권 / 43
- 다. 사회·경제적 권리 / 45
 - 1) 직업선택의 자유 / 45
 - 2) 재산권 보장 / 48
 - 3) 노동(근로)에 관한 권리 / 51
 - 4) 교육을 받을 권리 / 54
 - 5) 보전에 관한 권리 / 57

IV.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 63

- 1. 정치범의 범위 및 처벌 / 63
- 2. 수용시설 및 생활상 / 65
- 3. 정치범수용소외 주민구금 장소 / 73

V. 결 론 75

I. 서 론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존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쟁취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목숨을 바칠 만한 것이다.

- A. 포프(영국의 시인·비평가) -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있어 어느 누구의 간섭이나 침해도 받지 않고 행복을 추구할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같은 맥락에서 세계인권선언도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간에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제1조)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신은 근대적 인권사상의 집약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상징’으로서 성문헌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본적 인권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거나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나아가 UN헌장과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인권규약들이 채택됨으로써 인권존중의 국제화시대를 맞게 되었다.

이같은 근대적 인권사상은 우리의 헌법에도 기본권으로 받아들여져 인권보장에 대한 법적인 장치를 마련,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

의 가치로 존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통일방안에도 이 정신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우리 정부는 「한민족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방안」에서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자유·복지·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 건설을 통일조국의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바, 그 인권사상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여기서 통일원칙은 자주·평화·민주로 하고, 통일과정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 조항을 규정하고 각종 법률과 사회제도를 마련하여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인권에 관한 국제협약을 수용하고 인권단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협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국제적 인권운동을 외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귀순자들의 증언이나 국제인권단체들의 보고서들에서 지적되고 있다.¹⁾

북한의 이같은 인권침해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국가와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인권개념에서 부터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구와 같은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은 국가의 간섭없이 자기

1) 김영삼 대통령은 광복 49주년(1994. 8. 15) 경축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통일을 추진하는 우리의 기본철학 역시 자유와 민주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유없는 민주가 있을 수 없고, 민주없이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 통일된 조국은 7천만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며,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공동체를 토대로 건설되어야 합니다.”

2) 프리덤 하우스사 발행, 「1989년 세계의 자유」에서 각국의 자유화의 정도에 따라 3구분(자유·부분적 자유·부자유국가), 13등급으로 구분한 결과에 의하면 북한은 부자유국가 13등급(최하위)으로, 한국은 자유국가 4등급으로 분류.

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반해 공산주의 사회는 개인의 이해는 곧 당이 내놓은 집단적인 이해와 일치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국가와 당은 노동자의 객관적, 집단적 의지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결코 잘못을 저지를 수 없다고 본다. 심지어 공산권에서는 개인의 자유조차도 당과 국가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³⁾

그러나 북한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해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체사상의 기본목표에 따라 ‘수령·당·대중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일심단결의 사회주의 대가정’을 부르짖으며 개인의 자유보다 집단의 이익을 강조하면서 1당 독재를 실시, 온 사회를 극도로 억압·통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일은 김일성 사후에도 여전히 자신의 이상화를 통한 후계체제 공고화를 위해 인덕정치·광폭정치를 내세우면서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강조하고 조그마한 ‘시혜’도 ‘인덕정치’에 연유한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

당과 수령의 인덕정치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하에서 고귀한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며 가장 값높고 존엄있는 삶을 누리고 있다 …… 전체인민이 수령을 친아버이로 모시고 받들며 당의 품을 어머니 품으로 믿고 따르며 수령·당·대중이 생사운명을 같이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

3) 이장희, “Helsinki 인권규정이 분단국가에 주는 의미,” 통일원, 「통일문제연구」, 1권 3호(1989), p. 43 참조.

를 이루고 있다 …… 이것은 우리 당의 인덕정치의 자랑찬 결실이다.

[김정일 논문,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중에서, 1994. 11. 1]

김일성 사후 처음 발표된 상기 김정일 논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북한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권의 개념은 초국가적인 천부적 인간의 권리가 아니라 오로지 당과 수령에 의해서 부여되고 보장된 ‘공민’ 전체의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본적 인권은 국가권력에 의해서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이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시민적 자유권에 두지 않고 국가의 물질적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수익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모든 생산수단을 ‘전인민적 소유’를 목표로 국유화하여야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이익에 따른 대립이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데서도 찾아 볼 수 있다.⁴⁾ 따라서 천부적 인간의 권리로서의 인권은 당의 의사에 저촉될 수 밖에 없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논리는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논리로 귀착된다.

또한 모든 주민은 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발전에 자발적으로 협조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기본적 인권은 노동의 권리만을 그 원초적 권리로 간주하고 있다.

요컨대, 북한은 김일성 사후에도 여전히 1당 독재체제의 강화·

4) 북한은 1994. 8. 15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 제하의 「김일성 방송 대학」 특강(명방)을 통해 사회주의적 소유의 기본적인 발전방향은 생산수단에 대한 ‘협동적 소유’를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 나가는 데 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부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개혁과 개편 바람으로 사회주의적 소유를 허물이 사적 소유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주의가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평가. 통일원, 「월간 북한동향」(1994. 8.), p. 29.

유지라는 일관된 정치적 목표에 따라 기본권의 박탈은 물론 방대한 정보기관을 조직, 주민을 강압하고 있다. 또한 정치적 반대 세력을 격리·수용하기 위해 정치범수용소를 운영하는 등 인권유린을 무자비하게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남북한 주민 모두가 인간다운 품위와 존엄성을 향유하는 평화통일의 성취가 우리 민족의 절실한 과제라는 인식하에서 북한의 인권에 대한 보다 정확한 실상 파악을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제II장에서 근대적 인권사상이 집약된 국제인권보호규정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제III장에서는 북한의 인권관련 규정 해설과 함께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를 국제인권규약의 기준에 의거 기본적 권리, 정치적 권리, 사회·경제적 권리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 개념⁵⁾과 대비하여 살펴본 후, 제IV장에서 정치범수용소 실태를 소개하고 제V장에서 결론을 맺고자 한다.

5) 버지니아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에 있어서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독일에서는 기본권(Grundrechte)이라 하고 있다.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Menschenrechte)라 함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한다. 이에 대하여 기본권이라 함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의미한다. 그런 까닭에 엄격한 의미에서는 기본권과 인권은 동일한 것이 아니나, 각국의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자유권을 중심으로 하여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경제적 기본권, 청구권, 사회권 등이며, 그러한 권리들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권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권과 인권을 동일시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권영성, 「헌법학개론」, (서울 : 법문사, 1994), p. 129.

II. 인권의 개념과 국제인권보호규정

1.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이란 사람이 '압박과 공포', '빈곤', '차별과 박해'로부터 해방되어 모든 인간들이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가져야 하는 천부적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한다.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해 정당화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실정법에 근거하고 정당화되는 사실적 권리가 아니라 당위적이고 규범적인 도덕적 권리이다. 인권은 개인적 개인에게 귀속되는 권리라기 보다는 개인의 '집단'에 귀속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특정사회의 구성원들이 아직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실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인권에 속하는 권리는 규범적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인간인 한, 그리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2. 국제인권보호규정

국제인권보호규정 중 대표적인 것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 등이다. 이러한 규정들은 인권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으로 제시되어 개별국가들의 인권에 대한 지침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국은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가. 유엔헌장

유엔헌장은 7개항(전문, 제1조 3항, 제55조, 제56조, 제62조, 제68조, 제76조)에서 인권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조항은 전문과 제55조, 제56조이다.

동 헌장은 ‘인류의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다시한 번 확인’(전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인종, 성, 언어, 종교에 의한 차별없는 인권존중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를 규정하고(제55조) 모든 가맹국에 이의 준수를 촉구하고 있다(제56조). 따라서 유엔헌장은 인권에 관한 본격적인 국제규약은 아니지만 국제연합이라는 범세계적 평화기구의 가치관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 세계인권선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유엔헌장은 인권에 대하여 명백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취해야 할 특별한 행동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엔은 유엔헌장의 인권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보조기관인 인권위원회가 준비한 초안을 기초로 1948년 12월 10일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였다.

이 선언에서는 인권을 ‘정치적·시민적 권리’와 ‘경제적·사회적 권리’로 구분하고 (i) 정치적·시민적 권리로는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종교·언론·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ii) 경제적·사회적 권리로는 교육권, 노동권, 최저생활수준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예시하였다.

그러나 인권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이 상충되는 상황에서는 그 우선 순위에 따라 절대적인 '기본적 권리'와 상대적인 '2차적 권리', '추가적 권리'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i) '기본적 권리'는 인간다운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생명권, 신체의 자유, 육체적·정신적 건강보호권 등이며, (ii) 2차적이며 추가적인 권리들은 보장의 수준이 낮아질 수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본질적 부분이 침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될 수 있는 인권으로 재산권, 언론·사상의 자유, 참정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이다.

다. 국제인권규약

한편, 세계인권선언의 선언적 원칙들을 구속력 있는 일반조약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진행되어 1966년 12월 16일 유엔총회에서 두개의 인권규약, 즉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대한 국제규약」 및 「시민적·정치적 제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규약은 유엔헌장보다도 인권을 더욱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인권보호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규약들은 인권의 실효적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각기 구상하고 있는데, (i)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은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에 각 당사국에서 보내 온 보고를 심

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각 당사국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그의견을 진술할 임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ii)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는 인권의 보호가 제대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일국의 경제가 일정수준에 올라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의 제도적 장치와는 대조적으로 여기서는 단지 경제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노력으로서 일국에서 행해지는 제반조치에 대한 정기적 보고를 유엔경제사회이사회에 제출토록 하는 것에 그치고 있으며, (iii) 「선택의정서」는 개인의 청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해국가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고 또한 권고하는 것 뿐이다.

국제인권규약은 국가간의 조약이다. 이 조약을 비준한 국가는 조약에 포함된 조항을 존중하고 조약에 의해 요청된 상태를 유지하거나 확립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민을 위하여 특정한 제도설치를 설치할 의무가 있다.

결국 상기 인권관련 국제규약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확인한 기초위에서, (i) 인간에 가해지는 온갖 형태의 물리적·정신적 외압의 제거를 통해 인간의 자유상태 회복을 보장해 주는 것(주로 정치적·시민적 권리)과 (ii) 다른 한편으로 자아실현의 완성을 위한 제반조건들의 성숙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주로 경제적·사회적 권리)등이 인권보호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III. 북한의 인권규정과 그 실태

1. 북한의 인권규정

북한은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람중심의 세계관이며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혁명사상인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제11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노동당의 결정·지시가 헌법보다 상위에 있으며 그에 우선함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 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⁶⁾라고 규정하여 노동당은 김일성의 교시에 절대 복종하여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고, 그 아래에 노동당의 결정이 있으며, 헌법은 노동당 결정보다 하위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북한에서의 모든 법률(헌법, 형법 등 일반 법률)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에 맞춰 김일성 부자 독재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볼 때, 북한에서의 법은 당 및 정권기관의 주민통제 강화와 사적 생활을 제한하려는 목적에서 공법화되어 있다. 권리보다 의무중

6) 「'92북한개요」(서울: 통일위, 1992), p. 542.

심으로 되어 있으며 법의 제정 및 운용이 당의 정책에 예속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는 주체사상⁷⁾의 기본목표에 따라 헌법 제5장 국민의 기본권리와 의무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생활의 대원칙을 선언하였다. 국민의 기본권은 주로 무상치료권, 휴식권, 여자의 권리 등 사회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한 일련의 기본권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와 의무는 북한의 모든 ‘인민’에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⁸⁾에게만 인정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헌법에 “국민은 국가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라고 규정, 이 조항이 헌법상 규정된 권리의 실현에 있어서의 평등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해방이후 1958년까지 반김일성 세력을 제거하면서 김일성 1인의 독재체제 구축과 개인숭배의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여러 차례에 걸친 성분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엄격히 심사, 주민들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

7) 여기서 주체사상은 광의로 해석한다. 즉, 앞에서 지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의 ‘혁명사상’도 북한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의 한 ‘고리’이다. 김정일은 1986. 7. 15 그의 논문 “주체사상 교양에서 제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주체사상 교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우리 당에는 주체의 사상체계밖의 다른 사상체계가 필요없으며 주체사상교양과 인연이 없는 그 어떤 다른 사상교양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계급교양, 당정책교양, 혁명전통 교양,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양과 같은 여러가지 형태의 사상교양의 내용이 주체사상원리 교양의 내용과 꼭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인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의 한 고리입니다.”

8) 국민 : 일정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 헌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지닌 사람(「조선말 대사전」, p. 270).

대계층의 3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이 계층을 다시 51개 부류로 더욱 세분화하여 일종의 신분제도와 같이 운영하고 있다.

〈표1〉 주민성분조시사업

구 분	시 기	내 용
중앙당집중지도 사업	'58. 12 ~ '60. 12	* 적대군중으로 분류후 이들 가운데 6,000여명을 인민재판으로 처단하고, 약 7만명은 '내각결정 149호'로 산간벽지로 추방
주민제등록사업	'66. 4 ~ '67. 3	* 100만 적위대의 무장을 위한 주민성분 분류(직계3대·처가·외가 6촌까지 내사)
3계층 51개부류 구분사업	'66 ~ '70. 6	* 주민제등록사업 결과를 토대로 전주민을 핵심계층, 기본계층, 적대계층으로 구분, 이를 다시 세분하여 51개 부류로 구분
주민요해사업	'72. 2 ~ '74	* 남북대화 관련, 주민동태 조사·파악, 전주민을 믿을 수 있는 자, 반신반의자, 변절자로 구분
주민증검열사업	'80. 1 ~ '80. 12	* 김정일 지시로 공민증 대조 및 갱신으로 불순분자 색출과 통제 기능 강화
외국귀화인 및 월북자 등에 대한 요해사업	'80. 4 ~ '80. 10	* 월북자 등 외부에서 입북한 자들을 13계층으로 구분, 감시자료를 체계화
북송제일교포 요해사업	'81. 1 ~ '81. 4	* 북송교포들에 대한 자료를 세분하여 동향감시자료를 과학화
주민증갱신사업	'83. 11 ~ '84. 3	* 공민증 갱신 및 주민문건 정비

* 출처 : 통일원, 「'92북한개요」(1992), p. 267.

그리고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며 '인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한 형법은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온갖 요소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인민대중의 자주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는 '프롤레타리아독재의 예리한 무기'라고 규정함으로써 형법의 노동계급적 본질을 강조하고 있다.⁹⁾

북한 형법은 이러한 계급적 본질에 따라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계급적 원수들에 대하여는 무자비하게 치고, 김일성 부자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사소한 요소에 대하여도 가장 단호한 징벌을 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또한 "형법의 해석 및 적용도 정치와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높은 정치사상성이 요구되므로 형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급적 입장이 철저히 지켜져야 하며 당의 영도를 받아야 한다."¹⁰⁾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형벌은 크게 기본형벌과 부가형벌로 나누어진다.

(i) 기본형벌은 사형, 노동교화형의 2가지 형벌로서 죄를 범한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ii) 부가형벌은 선거박탈형, 재산몰수형,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형의 3가지 형벌로서 죄질에 따라 기본형벌에 부가하여 처벌되는 형벌이다.¹¹⁾

따라서 북한의 형법은 개인 및 사회의 법익보호나 피의자 인권

9)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1990), p. 27. "우리의 법은 사회주의 사회의 법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기능을 수행하는 우리 국가주권의 법입니다."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p. 219.

10) 위의 책, p. 29. "법은 전적으로 당의 정책을 실현하며 당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당의 영도를 받지 않고서는 법을 옳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김일성 저작집」, 제12권, p. 222.

11) 1987. 2. 5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결정 제2호로 채택된 개정형법 제20조.

의 보호수단이 아니며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일 뿐 강제노역 등 기본권 침해의 근거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어서 북한 형법 내용중 주요 반인권적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유추해석의 인정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근대형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로서 법치국가에서는 당연한 원칙으로 수용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형법 제10조에서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똑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¹²⁾라고 해 유추해석을 명문화하고 있다.

② 형벌조문의 추상성

형벌법규는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하여야 재판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고 국민들로서도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와 그에 대한 형벌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행위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북한 형법은 이러한 근대형법의 일반원칙에서 벗어나 추상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¹³⁾

* “관리일군이 리기적 목적으로 직권 또는 직위를 랍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켰거나 일으킬 수 있게 한 행위”(형법

12) 북한연구소, 「북한형법의 실상」(1990), p. 33.

13) 위의 책, p. 36.

제124조)

* “관리일군이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행위”(형법 제 128조)

* “과렵치한 불량자적 행위”(형법 제131조)

따라서 북한 형법은 추상적이며 불명확한 용어를 많이 사용함에 따라 결국 당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마련하고 있다.

③ 예비와 미수의 처벌

근대형법에서 범죄의 예비나 미수에 대하여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이 원칙인바, 우리 형법도 예비·음모행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우리 형법 제28조) 미수범의 처벌도 형법 각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범죄에 한하고 있다(우리 형법 제29조). 그러나 북한은 형법 제15조에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범죄의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 모든 고의(故意) 범죄에 대하여 예비와 미수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의 예비만으로도 확일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할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심리상태까지 문제삼아 처벌할 수 있게 되므로 인권침해의 위험이 많다.

④ 불신고범, 방임범의 처벌

북한 형법에는 범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불신고범’과 범죄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면서 방지하지 않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입범’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반혁명범죄에 대한 불신고범과 방입범은 예외없이 처벌할 뿐 아니라 일반 범죄중에서도 강도죄, 살인죄, 군사상 범죄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불신고범과 방입범을 인정하고 있다.¹⁴⁾ 이같은 사실은 형법 제 122조에 명문화되어 있는바, 동 조항에서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대한 강도죄, 살인죄, 공민에 대한 강도죄의 범죄가 준비되고 있거나 감행된 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기관에 알리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불신고범과 방입범을 처벌하는 것은 주민간에 상호감시체제를 구축하게 되어 1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데에는 도움이 될 것이나 주민상호간에는 불신을 조장시킬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5) 부당재판의 처벌

북한은 형법 제129조에 “사건을 과장, 날조하였거나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라고 규정, 부당재판의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근대헌법의 삼권분립원칙에 의하면 재판은 사법부의 고유권한으로 하고 재판상의 과오는 상급법원에 대한 상소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 헌법에서는 삼권분립의 원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형법에서도 재판관의 재판행위에 대하여 ‘부당한 재판’이라는 추상적인 규정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권의 독립이 전혀 보장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¹⁵⁾

14) 위의 책, p. 39.

따라서 북한 형법 제129조는 사법부의 정치종속의 극명한 표현이며 김일성 부자 및 노동당의 전횡적 권력행사 범위를 무제한화 하는 조항일 뿐이다.

⑥ 생산수단화된 개인

국가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개인을 국가에 예속된 노동력 제공수단으로 취급하면서 개인의 노동력을 최대한 착취하기 위하여 강력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형법은 노동자 개개인이 국가에 제공하는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을 포괄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대표적인 예를 몇가지 들면 다음과 같다.¹⁶⁾

- * “오작설계로 시공하게 하거나 설계문건이 없이 또한 설계를 어겨 오작시공하여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79조)
- * “농업생산의 과학기술공정을 어겼거나 농산작업을 조잡하게 하여 농업생산에 큰 지장을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80조)
- * “집짐승을 기르는 일군이 위생방역 또는 사양관리에 관한 규정을 어겨 많은 집짐승을 죽게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형법 제81조)

따라서 북한에서 개인은 오직 집단을 위해서 봉사하는 생산수단에 불과하며,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원천적

15) 위의 책, p. 40. 북한에서는 민사재판에도 검사가 참가하여 재판관계자가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 등을 지키는가를 감시하도록 하고 있어 재판의 독립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다.

16) 위의 책, p. 41.

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2. 주요 사례로 본 인권실태

가. 기본적 권리

1)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라 함은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의 안전성과 자율성을 제한 또는 침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를 말한다. 이것을 '인신의 자유'라고도 한다. 신체의 자유는 정신적 활동에 관한 자유와 더불어 인간의 시원적 요구인 동시에 인간생존을 위한 최소한 조건이다.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밖의 자유나 권리의 향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된다.

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i) 불법한 체포·구속으로부터의 자유, (ii) 불법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자유, (iii) 불법한 심문으로부터의 자유, (iv) 불법한 처벌로부터의 자유, (v) 불법한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 (vi) 불법한 강제 노역의 금지 등이 있다.¹⁷⁾

따라서 사람은 누구를 박론하고 하등의 차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불법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정수이다. 그러나 북한은 공정한 재판절차없이 피의자를 구금하거나 고문 등 비인간적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지시나 당 정책을 어겼을 때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인민재판식 '공개재판'을 실시, 범죄용의자의 초

17) 권영성, 앞의 책, pp. 264~266.

보적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또한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가혹하다. 이들은 법에 의한 재판이나 형기에 관해 명확한 언급없이 '특별독재대상구역'이라는 수용소에 감금된다. 입소날부터 모든 기본적인 권리가 박탈당하며, 친지의 면회가 금지되는 것은 물론 서신연락도 할 수 없다. 수용자들은 '구역'안에 있는 광산, 벌목장 등에서 강제노동을 해야 한다.

〈주요사례〉

- * “1983년 1월이다. 김일성 신년사 발표를 시청하던 중 김일성의 목소리가 웅소리로 굵게 나자 ‘돼지 먹따는 소리처럼 짹짹 거린다’고 무심코 말 한마디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다음날 소리없이 불려갔고 현재 그의 가족까지 추방당했다는데 이웃들은 그가 특수처리대에 의해 사형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덕남, 1990. 9. 7 귀순]

- * “1990년 8월 북청군 소재 북청사범대학생 4명이 북청군 쌍림리 소재 옥수수 농장에서 옥수수 2배낭(약 10kg)을 절취했다. 이 과정에서 황해도 출신 학생(33세 가량) 한명이 경비원 1명을 전지가위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되어 1991년 4월초 북청 사범대 뒷산에서 사범대학생, 주민 등 2,0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총살형에 처해진 사실이 있다.”

[여금주, 1994. 2 귀순]

* 1989년 9월 평남 안주시 청천다리에서 협동농장원 고정갑이 강냉이 600kg을 절취한 죄로 공개재판을 통해 공개총살을 당했다. 안전원 2명이 피고인의 손을 뒤로 묶고 입에 재갈을 붙린 후 검은 천으로 눈을 가려 재판장 옆에 설치한 나무기둥에 결박한 후 사격수 3명(도안전원)이 사형수 전방 10m 지점에서 자동보총으로 3발씩 사격, 사살했다. 사살후 가마니 등으로 시체를 말아 구급차에 싣고 갔는데 총살형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큰 죄도 아닌데 아깝게 죽었다. 너무 잔인하고 무섭다며 당국의 무자비한 법집행에 불안과 공포를 느낀다고 했다.”

[백영길, 1994. 3. 11 귀순]

* “어떤 집에서는 장마철에 김일성 초상화에 습기가 차서 구김이 생겼다. 이 구김을 펴기 위해 초상화를 떼어내어 다리미로 펴다가 누렇게 퇴색되어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게 변해버렸다. 이 모습이 정성검열대에 발각되었다. 검열대 지도원은 ‘무엇 때문에 수령님의 초상화 얼굴을 다리미로 지졌는가?’라고 추궁했다. 이 추궁에 ‘구김을 펴보려는 충성심에서 그랬다’고 사실대로 답변했으나 결과는 사상체계를 걸어 시골로 추방되었다.”

[임정희, 1989. 9. 10 귀순]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극적으로는 그 사생활의 내용, 명예, 신용 등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자유로운 사적 활동과 생활을 형성하고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은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과 법적 안전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¹⁸⁾

그러나 북한은 헌법 제78조에 “공민은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 서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법에 근거하지 않고는 공민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살림집을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의 침해불가를 법적으로는 보장하고 있으나 무단침입 등 주민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북한은 당,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3중 감시체계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여세대로 구성된 인민반¹⁹⁾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사실을 공개 비판토록 강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감시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사례〉

- * 각 공장·기업소 및 리·동단위에는 보위부원과 사회안전부 요원을 주재시키고 유치원 보모들까지 정보원(밀정)으로 삼아

18) 위의 책, p. 285.

19) 북한 조선말 대사전(1992판)은 인민반을 ‘당과 국가의 정책을 관철하며 국가 사회 사업을 집행하고 생활을 알뜰히 꾸리기 위하여 일정한 수의 세대들을 묶어 조직한 국가, 사회생활의 기층 조직의 하나’라고 해석한다.

천진한 어린이를 이용하여 사생활까지 탐지하고 있다. 주민에 대한 감시체계는 5호담당제를 통해 5호담당 지도원이 각 세대의 사상동태,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30~60세대를 한개 인민반으로 묶어 인민반장이 행정업무처리 등과 주민동향을 파악, 매일 동 사무소에 보고한다. 한편 사회안전부 분주소에서는 인민반장과 협조, 주민동향을 파악 일반범죄자 등을 색출, 소조 책임자가 시·군·구역 당위원회내 3대혁명소조부에 보고한다. 각 기관·기업소내에서는 당 세포비서가 각 개인을 감시, 총화 등을 통해 비판하고 초급당 비서에게 매일 직보한다. 국가보위부에서는 수개 직장단위별로 보위부원을 파견, 사상동향을 감시하며 반당·반체제 사범 색출활동을 하고 있다.

[김수행, 1991. 9. 3 귀순]

- * “평양시에 세돌 지난 아이를 가진 부부가 살고 있었다. 부부는 그날도 병일과 같이 인민반장에게 찾아가 열쇠를 맡겼다. 그런데 그날 구역 당에서 유일사상검열성원이 내려와 인민반장과 함께 반내 모든 가정의 잠긴 문을 열고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와 도서를 검열하였다. 젊은 부부집에도 들어가 검열하였는데 책상 밑에서 로작 책뚜껑이 오춤에 젖어 맨 앞장에 있는 김일성 초상화가 오손된 것이 발견되었다. 소변이 붙은 사유는 3살짜리 아이가 장난을 치며 책을 가지고 놀다가 그냥 오춤을 썼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른 부모는 다른날과 마찬가지로 별일이 없다고 확인하고 인민반장에게 열쇠를 맡겼다가 변을 당하게 된 것이다. 결국 그들 부부는 철없는 아이의 소행이었지만 로작책 뚜껑에 오춤을 싸게 해 오손시킨

행위를 용서받지 못한 채 깊은 산골로 추방되게 되어 앞날까지 영원히 망치게 되었다.”

[고운기, 1989. 8. 12 귀순]

3) 거주·이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라 함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주소 또는 거소를 정하거나 그곳으로부터 자유로이 이전하거나,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거주지를 옮기지 아니할 자유를 말한다.

거주·이전의 자유의 법적 성격은 (i) 인간 존재의 본질적 자유, (ii) 인신의 자유, (iii) 정신적 자유, (iv) 경제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데, 특히 인간 존재의 본질적 자유로서의 성격은 인간의 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자유로운 인간교섭의 장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며, 따라서 개인의 인격형성에도 기여한다. 개인의 인격형성과 인간적 성장을 촉진한다는 의미에서 이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자유이다.²⁰⁾

그러나 북한은 헌법 등 어느 법령에서도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다만, 1947년 3월 7일 결정된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57호 「공민증 교부 사무 규칙」 중에서 여행자 취급에 관한 규제조항만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규칙에서 북한은 “거주하는 곳을 떠나 다른 곳에서 숙박하려는 때에는 숙박지 소관 인민보안기관(현재 사회안전부)에서 숙박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5조)라고 규정하고 숙박주는 숙박승인이 없는 동거가족이외의 자를 숙박시키지 못하도록(제56조)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숙박주

20) 권영성, 앞의 책, p. 294 참조.

는 숙박자가 출발할 때에는 숙박자에게 숙박증명서를 교부”(제59조)할 것을 의무화 시키고 있다.²¹⁾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른 군 지역으로 여행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여행증명서’를 발부받아야 여행할 수 있는 등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 만약 허가없이 여행할 경우, 경범죄 수용소인 ‘집결소’에 수용되어 30일간의 무보수 노동에 처해지기도 한다.

〈주요사례〉

- * “외부지역에서 온 사람이 숙박을 하려면 해당인민반 숙박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인민반장의 확인이 끝난후 분주소(파출소)에 찾아가 공민증과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모 형제 친척 사이라도 무조건 숙박을 하다 검열에 적발되면 벌금과 증명서 특기란에 무단숙박자였다고 기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제를 하고 있다.”

[소영식, 1988. 9. 24 귀순]

- * “북한은 전국의 모든 ‘난장이’들을 자강도와 양강도 접경 고원지대에 집단 격리수용, 직접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며 살게 하면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는 등 통제하고 있다. 맹인들도 도소제지 이상 대도시에는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일정한 마을을 조성, 집단 거주토록 하고 있다. 특히 평양에는 병어리, 귀머거리 등까지 지방으로 전원 추방하였다.”

21) 대륙연구소, 「북한 법령집」, 2권 (1990), p. 686 참조.

[윤 응, 1993. 10. 11 귀순]

* “자식을 군대에 보낸 집이 있었는데 아들이 사망하였다는 통지가 날아 왔다. 부모는 즉시 여행증명서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통제때문에 장례날짜에 가지 못했다. 그 부모들은 ‘자식 잃은 것만도 원통한데 죽은 자식도 못보게 됐다’고 땅바닥을 치며 울다가 끝내는 ‘이놈의 세상, 이놈의 세상...’ 하면서 대성통곡 하는 것을 보았다.”

[소영식, 1988. 9. 24 귀순]

4) 정신적·사회적 활동에 관한 자유

정신생활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사상의 형성과 그 전달, 양심과 신앙의 유지, 학문의 연구 등은 그 성격상 국가권력에 의한 억압이나 간섭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특히 민주사회에 있어서는 정신적·사회적 활동의 자유가 체제 자체의 존립과 그 민주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대한으로 존중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자유는 인간의 자유로운 정신활동과 사회활동의 확보를 그 궁극의 목표로 한다. 특히 종교의 자유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 그리고 이책에서 정치적 권리로 분류한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등은 정신적 활동을 그 기본으로 하되 사회적 활동으로서 전개되기도 한다.²²⁾

그러나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민들

22) 권영성, 앞의 책, pp. 302~303 참조.

의 기본적인 양심의 자유조차 규제되고 있다. 주민들은 오직 김일성 부자의 지시와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판단·행동해야 하므로 개인적인 양심과 사고는 억제되고 있다.

또한 하나의 사상만이 존재하는 북한에서는 헌법에 “국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제68조)라고 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후단에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 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라는 애매한 단서조항을 넣어 사실상 종교의 자유를 인정치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사찰, 교회, 성당 등은 북한 주민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설립된 종교시설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해외의 종교인, 관광객 등 방문객을 통한 대외선전용 시설일 뿐이다.

그리고 개성있는 창작작업으로서의 문학·예술활동은 용납되지 않는다. 북한에서의 문학·예술활동은 오로지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모동계급화 하는데 복무하는 수단”²³⁾으로만 존재가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예활동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원칙²⁴⁾에 따라, 또한 당의 지시와 통제에 따라 당의 이익과 당의 견해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주요사례〉

* “북한의 최고법이라 할 수 있는 당의 유일사상 10대원칙은 모

23) 1970년 11월 노동당 제5차 대회 사업 총화 보고에서의 김일성 연설.

24)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란 “민족적 형식에 따라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혁명적 문학예술의 창작 방법”으로 설명되는데, 이때 사회주의적 내용이란 당성·계급성·인민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92 북한 개요』(1992), pp.336~337 참조.

든 인민들이 김일성이 생각하고 의도하는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한 전 인민을 여러 형태로 조직에 편성시켜 놓고 생활의 일거일동을 주, 월, 분기,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주기적으로 총화(비판)함으로써 인간본능의 양심을 규제·통제하고 있다. 만약 개인이 양심적인 발언을 한다면 그것은 곧 김일성에 대한 항명으로 매도되어 비판을 받아야 한다. 심지어는 정치범이 되어 특별독재대상구역에서 종신 동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여야 한다.”

[고운기, 1989. 8. 12 귀순]

* “1988년 9월 신축된 평양 만경대 구역 건국동 소재 봉수교회는 평시에는 관리원 가족만 거주하면서 철문을 굳게 닫고 있다. 외국인 참관시에는 만경대구역내 동사무소 근무자 등 당에서 엄선한 40~50대의 남녀 수백명이 위장 예배를 본다. 주민들의 출입이나 접근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 교회의 인근 주민들은 봉수교회를 ‘외국인 참관지’로 인식하고 있다.”

[김명철, 1993. 7. 15 귀순]

* “함경남도 신포시의 한 마을에는 머리를 약간 흔들거리면서 다니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분은 해방직전에 무당을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는 3명의 손녀가 40세가 넘었는데도 시집을 못가고 있었다. 그 이유는 10대원칙에 명시된 대로 김일성을 충성으로 모시지 못하고 게다가 혁명적 신념을 갖지 못하고 살아온 집안이라는 낙인이 찍혀버렸기 때문에 손녀들이 머리도 좋고 약기도 잘 다루는 재능을 가졌어도

결혼을 못한 것이다. 그 처녀와 결혼을 하면 남자의 장래가 영원히 막히고 북한에서 계속 따돌림을 당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김 성, 1990. 6. 1 귀순]

- * “북한의 예술은 그 소재나 주제도 김일성·김정일의 우상화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연풍경을 그린 미술작품이라도 김일성·김정일의 사적물이 있는 고장이나 지역을 배경으로 그려야 당선이 될 수 있고 작품으로 인정을 받는다. 예를들면 만경대·백두산·백두산빌딩지대 등은 김일성·김정일의 고향 및 활동지역의 표현으로 이용되며, ‘강선의 노을’이라는 그림의 소재는 저녁노을보다는 김일성의 천리마운동을 주제로 담고 있다. 서예작품도 김일성에 대한 글이나 반미·반제·반남 사상을 선전하는 것이나 중앙당 선전선동부에서 제공한 구호나 선전원고 외에는 임의로 쓸 수 없다.”

[이정철, 1993. 9. 23 귀순]

- * “아마 1984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나는 그때 해군이었다. 바닷가 초소에서 근무할 때 난생 처음으로 본 해당화꽃이 모래밭의 뜨거운 해풍 속에서도 곱게 피는 것을 보면서 시 한편을 썼다. 잘 쓰여진 시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조선인민군출판사로 올려보내려고 중대 정치지도원에게 그 시를 제출했다. 중대정치지도원은 그 시를 곧 상급정치부로 올려보냈다. 나는 그때까지도 매우 기분이 좋았다. 그러나 상급 정치부에서 온 소식은 나를 실망시켰다. 시의 주제가 당과 관련된 주제가 아

니며 사상성이 없는 시를 썼다고 비판까지 받았기 때문이었다.”

[김 성, 1990. 6. 1 귀순]

5) 법앞에 평등

‘법앞에 평등’이란 ‘법에 있어서의 평등’, 즉 법내용의 평등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법의 내용 그 자체가 불평등한 것이라면, 그것을 아무리 평등하게 적용할지라도 불평등한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은 자의적 차별이고, 자의적 차별은 평등의 개념인 정의에 반한다. 요컨대 평등의 관념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²⁵⁾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²⁶⁾ 북한의 헌법도 “국민은 국가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다 같은 권리를 가진다.”(제65조)고 명시, 모든 주민이 평등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생활에 있어서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전체 주민을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에 따라 3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하여 불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주민들에게 부과하고 있다.

즉, 북한은 이같은 성분분류에 따라 개인의 지위, 식량배급, 직장 선택, 교육, 의료기관 등의 시설 이용 등 생활 전반에 걸쳐 차별을 둘 뿐만 아니라 일반범죄에 대한 처벌을 결정하는데까지 차별 적용하고 있어 엄청난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이 이와 같은 계급정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은 김일성 부자

25) 상대적 평등설(배분적 정의론)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처우하되,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허용된다고 보는 입장이다.

26) 권영성, 앞의 책, p. 246.

〈표2〉 신분 분류 및 대우

3 계층	51 개 부류	대 우
핵심계층 (28%)	노동자, 고농(비습), 빈농, 사무원, 노동당원, 혁명유가족, 애국일사유가족, 8·15이후 양성된 인텔리, 피살자 가족, 전사자 가족, 후방가족, 영예군인 등 12개 부류	* 당·정·군간부 등용 * 타계층과 분리 특혜 조치(진학, 승진, 배급, 거주, 진료)
기본계층 (45%)	소·중상인, 수공업인, 소공장주, 하층집객업자, 중산층 집객업자, 부소속, 월남자 가족(1), 중농, 민족자본가, 월남자 가족(2), 월남자 가족(3), 중국귀환민, 일본귀환민, 8·15이전 양성된 인텔리, 안일·부화·방탕한 자, 집대부 및 미신 숭배자, 유학자 및 지방유지, 경제사범 등 18개 부류	* 각종 하급간부 및 기술자 진출 * 극소수 핵심계층으로 승격
적대계층 (27%)	8·15이후 전라노동자, 부농, 지주, 친일·친미주의자, 반동관료배, 천도교 청우당원, 입북자, 기독교신자, 불교신자, 천주교신자, 출당자, 철직자, 직기관 복무자, 체포·투옥자 가족, 간첩관계자, 반당·반혁명종파분자, 처단자 가족, 출소자, 정치범, 민주당원, 자본가 등 21개 부류	* 유해, 중노동에 종사 * 입학, 진학, 입당봉쇄 탄압 * 체제·감시·포섭대상으로 분류 - 체제: 강제이주 격리수용 - 감시: 지정하여 항시 동태 감시 - 포섭: 집중적 교양 * 극소수 기본계층으로 재분류(자녀)

* 출처 : 『'92 북한개요』(1992), p. 268.

와 당을 반대할 소지가 있는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격리시키려는데 있을 뿐 아니라, 반당·반혁명적 세력의 색출과 사상성을 점검하여 주민들에 대한 정치·사회적 통제를 가하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²⁷⁾

〈주요사례〉

- * “김일성을 포함, 200만명이 엘리트 특권계급이며 1천 500만명이 제한된 권한만을 행사하며 300만명은 불순분자로 분류돼 일체 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어린이 여러 명이 똑같은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가 속해있는 계급에 따라 처벌이 달라진다.”

[케리건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연구소 북한인권 세미나 발표내용, 세계일보(1992. 5. 22, 5면)]

- * “당간부나 행정간부는 먹고 입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고 있다. 또 이들에게는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어도 노동자들처럼 법적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간부들은 직위에 따라 국가로부터 주택, 가전제품, 식료품 등의 일용품을 전용상점과 공급소에서 보장받고 있고 가족수에 관계없이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는 방 한칸에 한세대가 살림을 하는 것은 보통이며 남의 집에 임시로 방을 만들어 살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만 보아도 북한이 무계급사회란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

[소영식, 1988. 9. 24 귀순]

27) 『'92 북한개요』(서울: 통일원, 1992), p. 269.

* “특히 북한은 아직도 조상들의 과오, 일제때나 전쟁때 있었던 과오를 가지고 후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거나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집은 6·25때 월남하였다는 할아버지 때문에 부모도 고생했지만 형제들도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어도 들어가자 못했다.”

[김 성, 1990. 6. 1 귀순]

* “평안남도 재판소의 한 고위간부는 국가자금 착복·치녀강간·유부녀 강간 등의 죄로 사회적으로 여론이 나뒀으나 법을 다루는 기관요원이라 해서 10년 이상 중형을 받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1년간의 교화노동으로 재판해 버린 사실이 있다. 또 평성시 행정위원회에서는 고위간부들의 국가자금 착복·부화사건이 집단적으로 나타나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 이 사건 역시 관대히 용서되어 지난 1983년 직위 철직만 되는 조치로 끝나고 말았다.”

[김광호, 1987. 3. 3 귀순]

북한은 해방후 일부 계층에만 적용해 오던 식량배급제를 1957년 11월 ‘내각결정 96호 및 102호’에 의거해 ‘식량판매를 국가적 유일체제로 할데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부터 협동농장원을 제외한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식량배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협동농장원들은 협동농장의 연말결산시 1년분의 식량을 현금으로 분배받기 때문에 제외된다.

북한에서의 식량배급제도는 주민통제의 중요한 수단이고 사회계층간 불평등을 이부고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최고대우를 받는

‘매일공급 대상자’는 당정치국 위원·후보위원, 당중앙위 비서, 중앙당 부장, 제2보위부(김정일 호위담당) 군관, 사진사, 재봉사, 김정일 서기실 요원 등이며 이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은 호위총국 공급과에서 백미(1일 800g), 육류(돼지고기, 닭고기),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최고급으로 풍족하게 가정에 매일 배달공급한다.

‘1주 공급대상자’는 중앙당 부부장, 부총리, 제1호위부(김일성 호위담당)군관, 인민무력부 및 사회안전부 장령급 군인 등이 해당된다. 이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은 당 재정경리부에서 각 가정에 식량(1일 700g, 백미:잡곡=7:3), 육류, 맥주, 야채, 담배 등을 주 1회 배달 공급된다.

‘2주 공급대상자’는 당 중앙부서 지도원, 책임지도원, 과장 등이 해당되며 이들에 대한 식료품 공급 역시 당 재정경리부에서 월공급량인 식량(1일 700g, 백미:잡곡=6:4), 육류 4kg, 물고기 10kg, 야채, 기름, 담배 30갑 등을 2주에 1회씩 분할 배달공급한다.

‘1개월 공급대상자’는 특별계층에 포함되지 않은 당간부들로서 이들은 자신의 지위와 직종에 따라 다시 1호 공급소, 2호 공급소, 3호 공급소, 4호 공급소로 분류된 해당 공급소에 미리 지급된 ‘공급카드’를 제시하고 월공급량의 범위내에서 직접 식량을 조달한다. 이들에게는 1인당 700g의 주식과 각 공급소별로 차등한 부식이 공급된다.

‘일반공급대상자’들은 통상 1개월 단위로 일정량의 식량이 공급되어 형식상 ‘1개월 공급대상’과 유사하나 이들은 노동자, 농민 등 일반주민들이 그 대상이라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1개월 공급대상자들을 포함한 이상의 4등급으로 분류된 공급대상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식량이

공급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또한 월등히 비싸다.

〈표3〉 1개월 공급대상사 월배급 기준

공급소	대 상	월 배 급 량
1 호	정부원부장·부부장 등	식량(1일 700g, 백미:잡곡=5:5), 야채, 육류(6kg), 물고기(10kg), 계란(30개), 기름(3l), 담배(30갑) 등
2 호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연합기업소 지배인 등	식량(1일 700g), 육류(4kg), 야채, 계란(15개), 맥주, 기름(2l), 물고기(5kg), 담배(30갑) 등
3 호	정부원 각부처 과장 책임지도원급 등	식량(1일 700g), 육류(2kg), 야채, 계란(15개), 기름(1l), 물고기(1kg), 담배(30갑) 등
4 호	정부원 각부처 과장급, 항일투사 유가족, 영웅칭호자	식량(1일 700g), 육류(1kg), 야채, 계란(15개), 기름(1l), 물고기(1kg), 담배(30갑) 등
일 반 공급소	일 반 주 민	식량(1일 700g, 백미:잡곡=4:6, 농촌은 1:9), 된장, 간장, 야채 등

6) 청구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이라 함은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 청구의 대상이 되는 국가적 행위는 입법, 행정, 사법과 같은 국가적 작용일 수도 있고 경제적 급부일 수도 있다. 그밖의 기본권은 그 자체가 권리의 목적인 데 반해,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밖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 그와 같은 권리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이다.²⁸⁾

북한은 헌법 제69조에서 “국민은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다. 신소와 청원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심의 처리하여야 한다.” 라고 해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침해를 미리 막거나 또는 침해된 권리와 이익을 회복시켜 줄 것을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 처리는 ‘법이 정한 절차와 기간안에’ 처리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신소나 청원시 그 침해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색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구권적 기본권은 허울뿐인 규정으로서만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색출되었을시 당의 정책과 지시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낙인 찍기 때문에 개인이익이 침해당해도 신소나 청원은 할 엄두를 못내고 있다.²⁹⁾

〈주요사례〉

- * “주민들이 신소와 청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은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신소사건이 발생하면 국가보위부나 안전부는 그 내용을 해결하기보다 필적조사 등을 통해 신소자를 색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신소자가 밝혀지면 불러다 놓고 ‘무엇 때문에 신소하였는가?’ ‘왜 수령님께 근심을 끼치는가?’라는 식으로 심문한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발각되었을 때 돌아오는 고통때문에 신소도 못하는 실정이다... 너무나

28) 권영성, 앞의 책, p.373.

29) 소영식(1988. 9. 귀순) 주요사례 참조.

억울한 입장에 처할 경우, 더 나쁜 대우를 각오하고 최후 수단으로 신소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대개는 보위부나 안전부로 불려가 심문당하다가 병신이 되거나 풀려나온다 해도 평생 요시찰대상으로 낙인찍혀 일생을 어렵게 살아야 한다.”

[소영식, 1988. 9. 24 귀순]

* “ 1988년 2월경 김덕천(34세, 보통강구역 서장동 거주)이가 중앙당 신소과에 ‘경제정책이 현실정에 맞지 않으며 경제발전을 하려면 개인기업으로 바꾸는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비밀투서를 하자 1988년 5월경 필적조사로 보위부에 검거된 후 소식을 모르고 조모, 가족, 삼촌 등 일가족은 통제구역으로 추방되었다.”

[김운학, 1989. 5. 6 귀순]

나. 정치적 권리

1) 언론·출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분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더 나아가 넓은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라 함은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외에 개인의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 위세스권(언론기관에의 접근권과 그 이용권), 반론권, 언론기관설립권 등은 물론, 언론기관의 취재의 자유와 편집·편성권 및 그 내부적 자유까지도 포괄한다.³⁰⁾

30) 권영성, 앞의 책, p. 313 참조.

북한은 헌법에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제67조)라고 언론자유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의 언론·출판은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방침을 해설 선전하고 옹호 관철하며 프롤레타리아독재를 가일층 강화하고 인민들의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하는데 복무”³¹⁾ 하도록 그 존재가치를 규정하고 있어 언론의 자유는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건설에 더욱 힘차게 다그치는데 이바지”³²⁾ 하여야 할 때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못박고 있다. 그리고 김일성은 출판물의 성격에 대해 “출판물은 당과 대중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며 당이 내세운 정치·경제·문화건설의 과업실천에로 근로대중을 조직 동원하는 힘있는 무기”³³⁾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언론과 출판물은 사전검열과 엄격한 통제를 통해 그 내용이 이 규정에 충실한가를 검열·승인받아야 인쇄·공표화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주민이 자기의사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권리, 알권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 부자의 지시나 당 정책을 비판할 시 재판없이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되거나 가혹한 처벌을 받는다. 때문에 주민들은 수령의 지시나 당정책을 무조건 찬성하거나 침묵할 수 밖에 없다.

한편 북한은 외부사조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도서 및 녹화·녹음테이프의 반입을 단속하고 해외여행자의 주민접촉을 봉쇄하고 있다.

31) 「백과전서」, 6권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 292.

32) 위의 책, p. 293.

33) 「김일성 저작선집」, 10권, p. 296.

〈주요사례〉

* “1979년도에 어머니 제자가 내안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내안 중기계공장 방송원으로 선발되어 근무하다가 당 위원회 선전부에서 비준받지 않은 내용을 방송했다는 이유로 산골로 추방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북한에서는 어린이들이 ‘조선소년단’(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에 보급하는 신문)이나 ‘새날’과 같은 월간 잡지에 글짓기 작문 하나를 써서 제출하려고 해도 우선 담임선생님의 검열과 소년단 지도원선생, 그리고 학교 당비서 선생의 검열을 거쳐야 한다. 이때 중점적으로 보는 핵심은 ‘김일성·김정일을 찬양하고 있는가’이다.”

[김 성, 1990. 6. 1 귀순]

* “1992년 4월경 청년 1명이 함북 청진경기장에서 개최된 ‘4·15상 축구경기’ 관람도중 경기장 담에 올라가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다. 김정일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 자유를 회복하자’는 내용의 전단 300여매를 살포하고 반김부자 구호를 외치다 현장에서 보위부원에게 체포되어 관중들이 보는 가운데 구타당하여 즉사하였다.”

[윤 웅·박수현, 1993. 10. 11 귀순]

* “1989년 6월 제13차 평양축전 행사에 동원되었던 외교부 행사지원팀인 ‘작전그룹빠’ 5명이 평양 창광산 호텔객실에서 유경호텔(105층) 건설을 화제로 ‘집이 모자라 동기세대도 해결 못하는 처지에 관광객들도 없는데 호텔만 크게 지어 뭘하겠

는가' 하고 비난발언을 하였다가 도청되어 전원 지방으로 추방되었다.

[고영환, 1991. 5. 2 귀순]

* “1988년초 김일성 종합대학생이 남한방송을 몰래 청취, 북한 경제의 불합리성을 깨닫고 김정일에게 ‘경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자 김정일은 ‘뭐 이런 놈이 있느냐’며 ‘즉각 잡으라’고 지시하여 1명은 검거 처형되고, 1명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1988년 8월 사회안전부는 ‘남조선방송 청취자는 처벌한다’며 ‘모든 라디오의 재등록과 남조선방송 청취 금지’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남명철, 1990. 4. 1 귀순]

2) 집회·결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회합 또는 결합하는 자유이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개인적 자유의 성격을 가진 표현의 자유라면,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집단적 형태로 행하여지는 넓은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한 형태이다.³⁴⁾

앞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북한 헌법은 “모든 주민은 집회·결사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제67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할 기구나 조직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오직 당의 지시에 의해 실시되는 집회나 당의 필요에 의한 결사만이 허용되고 있다.

34) 권영성, 앞의 책, p. 332.

가맹원의 권익을 대변한다는 각종 사회단체들도 당의 외곽단체로서 “당과 대중의 인전대로, 대중의 사상교양조직으로, 당의 충실한 보조자”³⁵⁾로의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당·국가의 필요에 의해 동원된 집회·결사는 보장되어 있지만 개인이나 이익단체가 결성되어 자기주장을 알리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집단적 소요로 간주한다. 북한 형법은 집단적 소동죄(103조), 허위풍설 날조 유포죄(105조)를 두어 ‘국가기관의 지시에 의하지 않거나 사회질서를 흑심하게 문란시키는 것과 같은 소동을 일으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해 왔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집회·결사와 시위를 통한 의사표시가 봉쇄된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불만표출이 벽보·빠라 등 음성적으로 표출될 수 밖에 없다.

〈수요사례〉

- * 정부의 허가없이 대중집회를 열 수 없다. 정부가 만든 조직 외에 알려진 것은 없다. 정부는 이웃간 모임, 동창회와 같은 비정치적 모임조차도 금한다. 각종 직업적 동맹이 이들 구성원에 대한 정부 통제의 수단으로 유일하게 존재한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1993) 북한관련부분]

- * 100개가 넘는 북한의 대중조직들은 북한당국이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운동에 동원되는데 그 예로 생산중대를 위

35) ‘조선로동당 규약’ 제56조.

한 천리마운동에의 참여 등이다. 또한 주민들은 이런 조직을 통해 외국고관이 북한을 방문할 때 공항에서부터 시내까지 연도에 늘어서서 환영하는데 동원되며 전시회, 행진, 군중집회와 같은 행사에도 참가하여야 하는데 불참자는 혁명정신의 결여, 불충성으로 평가받게 된다.

[미 아시아워치·미네소타 법률가 국제인권위 공동보고서, 1988. 12]

* “북한은 소·동구 붕괴후 유학생들을 소환, 사상검토 후 전국 각지의 대학 등에 분산 배치하였는바, 1991년 5월경 김일성대학에 배치된 학생들이 출신 유학국가별로 연계된 반체제활동을 주도하다가 국가안전보위부에 전원 체포되었는데 내가 소속했던 청진광산금속대학의 체코유학생 출신 김동국(30세)도 이 사건 연계혐의로 체포되었다.”

[윤 응, 1993. 10. 11 귀순]

3) 참정권

참정권이라 함은 국민이 국가의 의사형성에 직접 참여하거나 선거인단·투표인단의 일원으로서 선거 또는 투표에 참여하거나 또는 공직에 선임될 수 있는 국민의 주관적 공권을 말한다.³⁶⁾

북한은 헌법 제66조에 17살 이상의 모든 주민은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자신의 정부를 선택하는 것을 제도적 장치를 통해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

36) 권영성, 앞의 책, p. 368.

거종류는 (i)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ii) 시·도 인민회의 대의원, (iii) 군·구역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있다. 후보자는 오직 당에서 각 선거구마다 1명씩 선정한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일 공고후 1~2개월내에 당 중앙위원회에서 각 선거구마다 1명의 후보자를 선정하며, 시·도·군·구역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시·도·군·구역 당위원회가 선정한다.

따라서 북한에서의 선거는 대내적으로 당에 대한 신임을 확인하고 일당독재를 정당화하며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를 실시한다는 과시·선전을 위한 제도로 이용하고 있다.

〈주요사례〉

- * 북한주민은 지도자나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리나 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김일성과 그의 후계자 김정일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된다.

자유선거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다. 최고인민회의 또는 도·시·군당위원회에 대한 선거가 규칙적으로 실시될지라도 모든 경우 정부는 각 단위선거에서 단지 한명의 후보만을 인정한다. 북한 정부통계에 의하면 99% 이상의 투표율에, 노동당이 인정한 후보에 대한 100%의 찬성율을 보인다고 한다. 300백만 노동당원(전체인구 2,200만명)의 대부분은 당의 소수 엘리트가 만든 규칙을 지키는데 힘쓴다.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1993) 북한관련부분]

- * “선거위원회에서 세대주부터 일련번호로 등록된 선거번호표

를 받아 선거일 아침에 공민증을 휴대하고 선거번호표 일련 번호 순서대로 줄을 서서 대기하다 투표를 시작하는데 투표장에 들어가면 인명부와 대조한 후 위원들이 도장(붓뚜껑)으로 투표여부를 표시하고 투표용지를 받아 칸막이된 투표장으로 이동하여 김일성 초상화에 절을 하고 찬성, 반대표시 없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는다. 이때 투표용지에는 아무런 기표도 하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것이 찬성투표이며 반대투표를 하려면 별도 기재를 해야 하는데 감시원 앞에서 이런 반대투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장기홍, 1991. 11. 28 귀순]

다. 사회·경제적 권리

1)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이라 함은 사람이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계속적인 경제적 소득활동을 말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는 사경제적 소득활동을 자기가 원하는 바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므로, 직업의 자유라고도 할 수 있다.³⁷⁾ 북한도 헌법에 “공민은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공민은 희망과 재능에 따라 직업을 선택하며 안정된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보장받는다.”(제70조)라고 규정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에서의 직업선택은 취업희망자의 의사보다는 당과 정권기관의 조정·통제(인력수급계획)에 의

37) 권영성, 앞의 책, p. 356.

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주민의 직장배치는 중앙집권적 계획에 의해 집행되고 각 부문별 수요대로 할당 배치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희망, 소질, 능력은 부차적이고 직장의 자의적 이동 역시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직장배치시에 있어서 일차적인 판단기준은 당사자의 성분과 당성이라는 정치적 측면이며 그 다음이 학력, 자격, 활동력, 근무평점, 실무능력 등 종합적인 직무수행능력이다. 직무수행능력 가운데 특히 학력이 높이 평가되는데 이는 진화과정에서 성분이라는 당성이 상당한 정도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일부 기본계층과 적대계층의 주민은 사회적 지위와 보수가 나은 직업을 얻어 신분상승을 꾀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⁸⁾

특히 최근에는 힘든 일을 기피하는 풍조가 만연함에 따라 탄광·협동농장 등에 노동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세대군인들과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을 부리배치(집단배치)하고 있다.

〈주요사례〉

* “직장에 배치되는 졸업생들은 개인의 취미와 특기같은 것과는 관계없이 무조건 배치상(노력파견장)과 식량정지증명서를 배치된 기업소나 농장에 보내 놓고 학교에서는 근무장소만 알려준다. 만약 졸업생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 출근을 할 때까지 식량배급을 하지 않으며 ‘노력파견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없다. 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최초 배

38) 내외통신사, 『북한조감』 (1994), p. 98.

치된 직장에 출근하게 된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의 직장 배치는 김일성·김정일의 교시에 따라 대부분 무리배치된다. 제대자들에게는 제대증, 식량정지증명서, 당 및 사로청원 이동증을 문건으로 만들어 배치된 직장으로 발송하며 제대자들은 호송군관의 인솔로 배치된 직장 노동처로 가서 인계된다. 무리배치에 따른 불만으로 출근을 하지 않으면 식량공급을 중지하므로 할 수 없이 출근하여야 한다. 무리배치를 하지 않은 인원들은 연고지 배치는 되나 직장은 지역노동과에서 임의로 배치하며 본인의 의향은 묻지도 않은채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전문학교나 대학 졸업자들도 대학 간부과에서 파견장을 주는대로 무조건 출근해 근무해야 한다. 전공분야에 인원이 보직되어 있으면 일반 노동자로도 보직된다.”

[김 성, 1990. 6. 1 귀순]

- * “내가 근무하던 부대에도 1989년도에 무리제대를 시켜 어느 누구의 개인적 의사 파악도 없이 집단(무리)배치를 하였다. 이 때문에 제대자들은 군에서 제대를 하고도 부모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지 못한 채 노동현장으로 바로 내몰렸다. 이것은 북한 젊은이들 대다수가 겪는 고통이다. 왜냐하면 북한에는 17살 때 군대에 초모되어 10년간 군대생활을 한 후, 제대하면 고향으로 갈 때나 부모형제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대부분인데 제대 후에도 고향에 갈 시간을 주지 않은 채 바로 무리배치를 당하면 부모형제와 또다시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세가 되기 때문이다.

최근 군인들은 제대 때가 다가오면 자기 고향지역에 무슨

공사가 계획되지 않나 하고 김일성의 신년사, 당문헌 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신문 등을 살펴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것은 부모형제들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왜냐하면 최근 북한은 어떤 공사가 예정되면 그 지의 연고지를 둔 사람들을 부조건 부리제대시켜 배치하기 때문이다.”

[이덕남, 1990. 9. 7 귀순]

2) 재산권 보장

사유재산제의 중핵은 생산수단의 사유인가, 아니면 생존에 필요한 물적수단의 보장인가에 있다. 만일 그것이 생존에 필요한 물적수단의 보장만을 의미하고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재산권의 보장과 다를 것이 없다. 자본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재산권 보장의 근본적인 차이는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하느냐 않느냐에 있다.³⁹⁾

북한은 헌법에 “생산수단은 국가와 협동단체만이 소유한다.”(제 20조) “개인소유는 근로자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제24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에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재산은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에 국한된다. 한편 북한 헌법 제21조는 “국가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명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도 언제든지 국가가 수용할 의사만 있으면 박탈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9) 권영성, 앞의 책, p. 350.

〈주요사례〉

* 1970년대 중반까지만 하여도 농촌에서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주택에 한해서는 연고권이 재산권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팔고사는 거래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당시 친구 아버지가 집을 1천 5백원에 샀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북에서는 농촌에서도 개인 주택이 없다. 모두 국가소유 주택으로 넘어갔다. 이젠 서로 팔고 살 수가 없다. 아파트의 경우도 소유권이 국가적 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한번 배정받은 주택이라 해도 주택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말하자면 주택부가 비우라고 지시하면 하시라도 비워줘야 된다는 말이다.

평양중심 거리의 아파트에 들어가 보면 침대, 책상 등의 비품이 있는데 이런 비품들은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는 현상유지를 해놓고 떠나야 한다. 내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경험한 일인데 개인주택에 화재가 나서 전소되면 국가적 보상은 없다. 모든 것이 거주자 부담이다. 규정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이 난 것으로 인정하며, 만약 불이 났을 경우는 사용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한 벌금을 내거나 강제노동을 해야 하는 것이 현재 북의 실정이다. 또 북한에서는 개인재산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을 개인소유로 인정해 주는 문서가 없으므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김 성, 1990. 6. 1 귀순]

* 신혼가정을 비롯, 일반노동자들의 43% 정도가 주택배정을 받

지 못하여 합숙소나 독신자 아파트에서 부부가 서로 떨어져 살거나 온 가족이 단칸방에 모여 살고 있다.

북한에는 ‘동거’라는 독특한 형태의 임대방법이 있다. 방이 2개 이상 있는 집에는 구역(군) 당위원회, 동사무소 등으로부터 “당신집에 동거 살림 1세대를 들여라. 사정이 긴박하니 같이 고생하자.”며 생면부지의 세대를 같이 살게 한다. 때문에 일부 눈치빠른 사람들은 당에서 요구하기 전에 상점 판매원, 식당 접대원 등 자신에게 특이 될 사람과 상호연락하여 방을 내준다. 물론 임대료는 없다.

최근에는 시멘트, 강재, 유리, 목재 등 건축자재가 극히 부족하여 자재 공급 관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주택이 완공될 때 주택배정을 담보하는 조건으로 자재를 공급받게 해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김명철, 1993. 7. 15 귀순]

- * “물건은 월별로 인민반에 할당된다. 품목은 내약 그릇, 밥솥, 신발, 옷, 어린이 자전거, 부엌칼, 독(항아리), 찬장, 옷감 등이다. 이러한 물품들은 수량이 지극히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배당할 수가 없다. 가장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별하거나 인민반회의에서 추천하는 사람부터 구매권을 배당한다.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순서와 수량이 정해지면 배당받은 사람은 상품별로 정해진 가격의 돈을 내고 물건을 인수하게 되는데 이때부터 물건은 자기 소유불이 된다.

우리 동네에는 TV가 1대 있었는데 그것은 개인 소유불이

아니었다. 지난 1990년 2월 16일 김정일의 생일날 인민반 주민들용으로 시칭하라고 당에서 무상으로 준 것 뿐이었다.”

[김 성, 1990. 6. 1 귀순]

3) 노동(근로)에 관한 권리

노동의 권리라 함은 (i)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 능력, 취미에 따라 직업 내지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을 선택하고, 또한 타인의 방해를 받음이 없이 이러한 노동관계를 계속할 권리이고, (ii) 동시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얻는 대가로 생존을 유지하며, 노동의 기회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에 대하여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⁴⁰⁾

이에 반해 북한에서의 노동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주의 원칙⁴¹⁾에 의해 공동의 목적과 공동의 이익을 위한 집단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은 전 주민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또한 노동법 제33조에 “국가는 근로자들의 노동생활 조직에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학습하는 원칙을 철저히 관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에 “국가는 공동조직을 잘하고 노동규률을 강화하여 노동시간을 완전히 리용하도록 한다.”(제30조)라고 명시한 바와 같이 노동생활을 조직화함으로써

40) 위의 책, p. 414. 근로의 권리의 법적성격은 자유권설과 사회권설로 나뉜다. 이 중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로 파악하는 사회권설이 통설이다. 사회권설에 의하면 근로의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라고 한다.

41) 북한은 헌법 제63조에 “공민의 권리와 의무는 ‘하나를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에 기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들로 하여금 사생활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없도록 제도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북한은 헌법 제71조에 휴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4조에는 “국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건설을 최대로 다그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들은 소위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⁴²⁾ 등의 강화로 인해 휴식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사례〉

- * “북한 노동법에는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나같은 경우는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에 대한 공부를 사로칭 조직에서 17시부터 18시까지 실시할 때도 있었고, 농번기에는 읍내 농장에 나가서 곡수 한 그릇으로 저녁을 대신하며 약 3시간 정도 야간 모내기 작업을 했다. 또 금요일에는 강연회, 집중학습 등을 노동시간 이후 1시간씩 하였다.··· 일반적으로 북한에서는 평상시 아무리 열심히 일을 잘 해도 과외 시간에 하는 정치행사 한번이라도 빠지면 비판을 면치 못한다. 1주일에 한 번 있는 일요일 휴식날에도 지역내에 있는 각

42) 이 운동은 1950-1960년대에 추진했던 진군미 운동을 1990년대의 상황에 원용해 주민들을 긴장상태에서 총동원하려는 대중운동이다. 북한은 1993. 5. 11 ‘조국해방전쟁승리(휴전협정체결) 40주년에 즈음해 ‘로동당 중앙위원회 구호’를 발표하는 가운데 오늘의 실세를 단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헤쳐나가기 위해 전체 주민들이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갈 것’을 촉구함으로써 최초로 제기됐다. 로동신문 사설(1993. 5. 22)은 우리식 사회주의 총진군 속도 창조 운동의 목적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위력으로 전례없이 빠른 진군속도를 창조함으로써 우리식 사회주의에 우월성을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으로 높이 발양시키는데 있다’면서 특히 이 운동 추진과정에서 기술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내외통신사, 『북한용어 300선집』(1993), p. 127.

중 군사시설 공사에 동원되어 방공호, 해안방어벽, 반땅크 모래장애물 등을 만들었다.

공장기업소에서는 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월 1회밖에 휴일을 주지 않는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식량배급때 결근한 날짜만큼 공제하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고 있다. 직장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연간 3일 지각하거나 하루라도 무단결근(승인없는 결근)이 있으면 다음해 휴가 15일을 중지시키는 직장도 있다.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만 놓고 보더라도 월초에는 자제가 없어서 노동자들이 직장에 나와 명칭하게 앉아 놀아도 무조건 출근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제가 보급되어 작업이 시작되면 연장작업을 해 12~14시간씩 노동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이런 사유 외에도 북한에는 전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5~6시간씩 번갈아 가면서 정전이 된다. 이때에는 작업을 할 수 없으므로 노동자들을 직장에 출근시켜 기다리게 한 다음, 불이 들어오면 작업시간을 연장시켜 일하도록 하고 있다.”

[김 성, 1990. 6. 1 귀순]

- * “나도 평양산원을 건설할 때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하였다. 나와 함께 충성의 야간돌격대에 참가한 사람들은 모두가 8시간 직장생활을 하고 퇴근후 저녁밥을 먹고 새벽 2시 또는 3시까지 일하였다. 돌격대에 참가해도 국가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없다. 공사가 끝나면 입당자격을 주거나 훈장, 표창을 주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다고 돌격대에 참가한 전원에게 훈장, 표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당원자격을 주는 것도

아니다. 시범적으로 소수 인원을 선발하여 훈장이나 표창 또는 당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워하며 서로 경쟁을 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총화를 실시하며 우수자를 뽑아 입당후보자격을 주거나 TV, 양복지 등의 일용품을 수여하여 고된 노동도 참고 견디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고윤기, 1989. 8. 12 기준]

4)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학습권)라 함은 교육을 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아니하고(자유권적 측면),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사회권적 측면)을 말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주된 성격은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점에 있다. 이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외적조건의 정비(교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장학제도의 시행 등)를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⁴³⁾

북한은 헌법에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제73조)라고 규정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려면 정치적 배경(출신성분)이 좋아야 한다. 상급학교로의 진학 희망자

43) 권영성, 앞의 책, pp. 410~411.

가 신원조사에서 결격사유가 나타나면 대학입학을 위한 학력국가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어도 주요대학에 입학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 주요대학은 6촌까지, 일반사범대학은 4촌까지 성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사례〉

* “나는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전기간 10점 만점으로 최우등까지 받았으며 전교에서 1등 순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다. 대안시 교육위원회에 등록된 종합명단에도 나는 10등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교장선생님과 어머니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의 동료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다. 그러나 1979년 3월초 다른 학생들은 수험생 파견장이 나와 대학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나는 제외되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어머니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대학생 모집처에 찾아가서 ‘그 학생은 성적도 뛰어나고 부모가 당원이고 선생도 하는데 왜 대학생 모집에서 빠졌는가?’고 항의를 하니까한 대학생 모집책임 지도원이 ‘가족성분이 10호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다. 그 말에 두 교장선생님은 어이없이 놀라기만 했다고 했다. 우리가 10호 대상(월남자 가족)이 된 이유는 외삼촌이 1946년 12월경 월남을 하였기 때문이다. 대학생 모집책임 지도원은 대학은 못 가더라도 시험없이 갈 수 있는 전문학교는 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두 교장선생님은 학생에게 실망시키지 않도록 중앙에 있는 대학에

시험이나 한번 보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나는 평양철도 대학에서 시험을 보았다. 내가 생각해도 시험을 잘본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도 합격소식이 안왔다. 아버지는 애가 달아 평양철도대학 학부장으로 근무하는 동창생을 찾아가 나의 시험 성적을 알아보았다. 성적은 좋았으나 간부과에서 성분관계로 심사중이기 때문에 자기능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아버지가 그런 사실을 알고 온 후에도 나는 며칠 더 합격소식을 기다렸으나 내가 기다리던 소식은 끝끝내 오지 않았다. 나는 결국 설계전문학교에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하게 되었다.”

[김 성, 1990. 6. 1 귀순]

- * 중앙당부장, 정무원부장 등 북한 고위간부 자녀들에게는 무시험 특별입학이 허용되고 있다. ‘감’부자가 “당신 아들은 00 대학 00과가 좋겠구먼”하는 말만 한마디하면 본인과 부모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그대로 진로가 결정되는데 이런 절차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들간에 ‘교시받은 학생’(김일성이 지정한 경우) ‘지시받은 학생’ 또는 ‘말씀받은 학생’(김정일이 지정한 경우)이라고 호칭하며 은근히 아유한다고 한다. 평양외국어대학의 경우 입학경쟁율은 15~21:1로 매우 치열한데 입학생의 80~90%가 당간부 자녀들이다. 이러한 현상은 권력의 입김이 대학입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실력으로 입학한 학생은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한다. 학과 배정에 있어서도 인기가 제일 높은 영어과의 경우 90%이상이 중앙당 외교간부의 자녀들로 채워져 있다.

1988년 중앙당 한 외교간부가 평양외국어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학교 고위간부에게 비디오세트 6대와 수천달러의 뇌물을 주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적이 있다 한다.

[박수현, 1993. 10. 11 귀순]

5) 보건에 관한 권리

보건권이라 함은 국민이 그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⁴⁴⁾ 북한 헌법 제56조에 의하면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공고 발전시키며 의사담당구역제를 강화하고 예방의학적 방침을 관철하여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며 근로자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헌법상의 규정으로 볼때 북한의 보건정책은 전반적 무상치료제와 의사담당구역제 그리고 예방의학적 방침 등 세 분야로 대별된다.⁴⁵⁾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2기 7차회의(1960. 2. 27)에서 전 지역에 걸쳐 전반적 무상치료제를 실시한다고 의결한 뒤부터 전체 주민들에게 무상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모든 근로자들은 매월 ‘사회보장비’ 명목으로 기본임금의 1%씩 공제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과금에도 치료비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더욱이 농민이 도시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별도의 치료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농촌지역의 간이진료소 또는 일반진료소에서도 그 담당구역 이외의 주민들을

44) 권영성, 앞의 책, p. 432.

45) 「'92북한개요」, p. 302.

치료했을 때에는 진료비를 받고 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의료시설이나 설비, 약품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의료혜택도 계층별, 신분별로 차별한다. 일반주민이 치료를 받으려할 경우 진료절차가 까다롭고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뇌물수수도 성행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표4〉 북한의 의료시설 규모

유형	소재지	의사수	전문의 진과	병상	주요장비
도 의 학 대학병원	도인민위 소재지	약 200명		800~ 1,200	기본진료 및 치 료용 전장비
군 인 민 병 원	군인민위 소재지	약 50명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피부과, 안과, 이비인후과, 방사선과, 실험과, 물리치료과, 질핵과, 간염과, 구강과, 고리치료과 (계 14개과)	100~ 200	엑스선 현미경
리 인 민 병 원	리인민위 소재지	10명 이내	내과, 외과, 이비인 후과, 소아과, 산부 인과, 고리치료과 (계 6개과)	5~20	(규모가 클때) X-선 현미경
진 료 소	산 입 장 협동농장 부 락	1~2명	없 음	1~2	칭진기 등

〈주요사례〉

* 출산과 부인보전은 중요한 문제다. 솔라즈의원도 다른 VIP들

과 마찬가지로 그 유명한 평양산원에 가 본 일이 있다. 이 병원은 하나의 전시장에 불과하다. 그곳에 있는 환자나 의사 심지어는 애들까지도 배우들인 것이다. 이들은 이 산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방문객이 나중에 농장이나 공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똑같은 사람이 그곳 종업원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똑같은 사람이 공장에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또는 거리를 행군 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 병원에 있는 몇몇 여배우들과 직접 이야기해 보았더니 그들은 아주 제한된 사람들만이 이 병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곳에 있는 의료장비는 스웨덴이나 서독 또는 동독에서 가져온 고도의 기술장비들이다. 그러나 내가 스웨덴 회사들에 물어본 결과 그 회사들은 이 장비를 조작하는데 필요한 안내 책자 같은 것을 보낸 일이 없다고 했다. 그곳에서는 X-레이 필름이나 테이프 등이 많이 나올텐데 그런 것을 보관하는 장소는 없다.

최근 북한을 다녀온 한 친구는 이 병원에 들렀을 때 한 장비의 사진을 앞뒤로 찍어 왔는데 그 장비의 전기스윗치 프러 그는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이 사진은 지금 내가 가장 아끼며 보관하고 있는 것중의 하나다. 엘리트들을 위한 진짜 병원은 비밀에 쌓여 있다. 즉 감일성과 그의 측근을 위한 병원은 한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

[케리건 교수(미 햄라인대), 헤리티지재단 연구소 북한인권 세미나 발표 내용, 북한인권 심포지움 보고서]

* “42호 대상 환자 [간염·질핵·페라그라(영양실조환자)]

들은 대다수 격리대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수용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급식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환자들의 치료기간은 대부분 늘어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자수도 계속 늘어날 뿐 줄어들지가 않는다. 북한은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환자 수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 단위마다 1개소씩 설치해 놓고 있던 질핵예방원, 간염예방원, 42호병원을 각 군 단위마다 증설하여 환자를 수용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환자를 다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2호 대상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북에서 소위 ‘노동치료법’이란 것을 만들어 1일 2시간 정도 환자들을 노동에 동원시키고 있어 이 노동에 나갔다 온 환자들은 노동에 더 환멸을 느끼며 자기의 병을 치료하는데 협조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임정희, 1989. 9. 10 귀순]

* “그들이 병원에 들어가는데 색깔이 있는 진료카드를 발행받아야 한다. 당원은 붉은색이고 당원이 아닌 사람들은 푸른색이다. 보통 붉은색 카드를 가진 당원들은 우선적으로 치료를 받으며 더 신중히 검사받고 고급의약을 제조받는다. 피를 토하면서 병원에 옮겨진 푸른색 카드를 가진 51세의 노동자가 붉은색 카드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는 2시간 동안 응급조치도 받지 못한채 들것에 누워 있었다.”

[최근 방북 일본인 증언]

<봉화진료소>

- * 위 치 : 평양 보통강구역 신원동 소재
- * 이용대상 : 김일성 부자, 장성택(김일성의 사위), 당 중앙위 및
정무원 부장 이상과 그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당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
 - 특별 2과 : 당 중앙위 비서, 정무원 부총리
 - 일 반 과 : 당 중앙위 부장, 정무원 부장

<남산진료소>

-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문수동 소재
- * 이용대상 : 김일성의 4촌 이상 친척, 당 중앙위 부부장, 정무
원 부부장, 부부장 대우를 받는 각급 관리 및 직
계가족

<제 2 진료소>

- * 위 치 : 평양 대동강구역 문흥동 소재
- *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장령급(장군급) 및 직계가족

<인민무력부 간부진료소>

- * 위 치 : 평양 동대원구역 동대원동 소재
- * 이용대상 : 인민무력부 상좌, 대좌(대령급) 및 직계가족
 - ※ 중좌(중령급) 이하 군관 및 하사관은 대동강구역 문흥동

소재 11호 병원 이용

<평양 의학대학병원>

- * 위치 : 평양 중구역 농흥동 소재
- * 이용대상 : 당 중앙위 지도원급 이상 및 그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당 중앙위 과장, 당 조직지도부 부과장 등
 - 특별 2과 : 당 중앙위 지도원 등

<평양 김만유병원>

- * 위치 : 평양 대동강구역 청류동 소재
- * 이용대상 : 정부원 국장, 외교부 과장급 이상 및 그들의 직계가족
 - 특별 1과 : 정부원 국장, 국장급대우 간부
 - 특별 2과 : 외교부 과장 이상

※ 일반주민은 동 진료소, 구역병원을 이용하고 중환자는 김만유 병원 등을 이용

[고영환, 1991. 5. 2 귀순]

IV.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실태

1. 정치범의 범위 및 처벌

김일성은 정치범의 개념과 범위를 반혁명분자, 불건전 사상을 가진 자, 적대분자(당과 정권 반대) 등 매우 애매하게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사회주의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혁명의 사상과 열기를 반대하고 방해하는 온갖 반혁명적 요소들이나 불건전 사상과 비타협적 투쟁을 전개하는 적대분자들, 즉 당과 인민정권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짓밟아야 한다.”

[「김일성 저작선집」, 제12권, p. 217.]

현행 북한 형법상 규정된 주요 정치범 해당 죄는 죄질에 따라 (i) 국가전복음모죄, (ii) 조국반역죄, (iii) 반동선전선동죄 등이 있다. (i) 국가전복음모죄(제44조)는 ‘공화국을 전복하려는 음모에 가담하였거나 폭동에 참가한 자’, (ii) 조국반역죄(제47조)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과 같은 행위’, (iii) 반동선전선동죄(제46조)는 ‘공화국을 전복, 문란, 약화시키거나 그밖의 반국가적인 범죄 행위를 감행하도록 선전 선동한 자’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치범에 대해 ‘무자비’하게 처벌할 수 있는

12개 조항(형법 제44~55조)을 명문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적법한 재판절차없이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정치범(일명 7호 사범)은 사법기관인 검찰소나 재판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 비공개, 단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치범에 대한 처벌방법은 본인의 가족, 친척(경우에 따라)까지 연계시키는 연좌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정치범들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바, 통상 수용 대상자들의 죄질에 따라 '완전 통제구역'과 '혁명화 구역'으로 구분하여 격리 수용되고 있다.⁴⁶⁾ '완전통제구역'은 반당·반혁명분자, 종파분자, 해외도주기도자 등을 수용하여 거의가 종신 수용된다. '혁명화 구역'은 불순북송교포, 당정책위반자, 자유주의 성향자 등을 수용하며 일정기간(1~5년) 경과시 심사결과에 따라 출소 가능하다.

그리고 정치범의 체포, 처벌, 수용관리 등의 모든 업무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전담하고 정치범의 호송 및 외곽경비 등은 사회안전부의 경비대에서 담당하고 있다. 정치범의 색출은 주민 10명당 1명 정도로 비밀 조직된 각급 정보조사망(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당 조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일단 정치범으로 낙인찍히게 되면 범죄 용의자는 야밤을 이용, 이웃 주민 몰래 전 가족과 함께 수용소로 이송된다.

46) 특히 북한은 김일성 부자 세습체제 구축을 위하여 김정일의 3대 혁명조동맹(1973년부터)과 후계자로 공식 등장(1980년 6차 당대회 이후)함과 때를 같이하여 비판자 및 실직자들을 숙청, 그 가족들과 함께 수용소에 수감하여 왔다.

2. 수용시설 및 생활상

북한이 정치범을 특별수용하게 된 것은 1958년 연안파 숙청사건(8월 종파사건) 연계자 및 그 가족을 반혁명분자로 몰아 교화소가 아닌 특정지역에 집단 수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북한식 수용소군도인 정치범 수용시설을 북한당국은 '00호 관리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간에는 '특별독재대상구역', '종파굴', '정치범 집단수용소', '유배소' 등으로 불려지고 있다.

〈수용소 현황〉

수용소는 함남·함북, 평남, 평북, 자강도 등 5개도에 1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용인원은 현재 20만여명으로 추계된다. 수용소 규모는 각각 51~250km²로서 수용소 당 5,000명~25,000명을 수용하고 있다.

〈표5〉 특별독재대상구역 수용소 현황

도 별	수용소 위치
함 남	요덕·단천·덕성군
함 북	온성(2)·회령·화성·부령군
평 남	개천·북창군
평 북	천마군
자 강 도	동신군

〈경비실태〉

각 수용소에는 외곽 경비를 위해 3~4m 높이로 2~3중의 외곽 철책선과 철조망을 따라 1km 간격으로 약 7m 높이의 감시망루

초소를 설치하고 탈주가 용이한 곳에는 고압 전기철조망, 지뢰밭 설치와 함정을 파는 등 경계시설을 보완하고 있다. 한편 수용소안에는 건물 주위에 내부 철책선을 설치했다. 감시방법은 감시망루 초소에서 감시와 함께 외곽순찰조와 매복조를 운영하여 주야로 경계하며 감시원은 AK자동소총과 수류탄 및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수용자 대우 및 일과〉

정치범으로 낙인찍힌 자가 일단 수용소에 들어가면 우선 농민증을 압류당하고 친지면회와 서신연락 등이 금지되어 외부와 차단된다. 또한 선거권, 피선거권 등 기본권이 박탈되고 정상적인 배급, 의료혜택 등이 중지되며 결혼 및 출산이 금지된다.

수용자들은 새벽 5시반까지 아침식사와 작업준비를 완료하고 보위부원과 작업감독으로부터 인원점검을 받는다. 인원점검시 조금이라도 늦게 나오는 경우, 심한 구타를 당하고 3회 이상 늦으면 월지급 식량에서 하루분을 공제한다. 작업은 5인조로 작업반을 구성하여 저녁 9시까지 실시한다. 저녁 10시부터 1시간정도 김일성 덕담, 김부자 찬양노래, 주체사상 학습 등을 교육받는다. 점심은 각자 지참한 강냉이 주먹밥으로 식사한다. 저녁 6시에 담당 보위원이나 감독, 인민반장 등이 할당된 작업결과를 중간 점검하고 목표가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연장 작업을 실시한다.

단체행동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작업과 학습시간을 제외하고는 2명 이상이 모여 다니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수용자로 위장한 정보원을 잠입시켜 정치범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고 체제 비판자나 탈출을 기도하려는 자들을 색출한다.

〈식생활〉

‘가족세대’의 성인 1인당 주식은 1일 강냉이 550g(사회일반노동자 700g)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부식물은 소금과 주 1회 정도 도토리된장 한숟갈을 배급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작업태만등을 이유로 수시로 배급량을 공제하고 있어 수용자들은 한달중 보름정도는 산나물, 풀뿌리, 나무열매 등으로 연명하고 있다.

‘독신중대’에 수용된 자들의 경우는 더욱 열악하다. 독신중대는 식량을 배급하지 않고 식당에서 공동 취식한다. 매끼마다 강냉이 120g의 주식(1일 기준: 360g)과 멸건 시래기 소금국만을 제공하며 작업태만시 또다시 30g을 공제하고 배식한다. 따라서 수용자들은 허기로 인해 통상 1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하고 나면 15kg 정도씩 체중이 감소한다. 귀순자 안혁은 그의 체험기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고 있다.

“1주일 동안 부식토를 생산했는데 나와 허강철이는 죽었다 깨어났다. 일을 워낙 못해서 사상투쟁 무대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것이다.

‘저 개새끼, 죽일 새끼, 일도 못하는 놈, 밥도 굶기라.’

‘누군 힘들지 않아서 일하는 줄 알아?’

‘죄 지은 주제에 피 쓰지 말라.’

보위원이 지켜보고 있어서인지 같은 죄인끼리도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고 욕하고 악을 썼다.

‘저런 새끼는 밥 줄 가치도 없어.’

결국 허강철과 나는 한 끼 120g에서 90g으로 양이 줄어든 밥을 먹게 되었다. 이것은 한 숟가락만 수북히 뜨고 나면 없

는 정도의 적은 양이었다.”

[대왕의 제전 ②, p.220.]

특히 독신중대 수용자들은 배고픔으로 돼지나 소 구유통속과 심지어 쇠뿔속에 있는 강냉이알, 콩 등을 찾아내어 씻어먹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용자들은 영양보충을 위해 개구리알을 버거나 뱀, 쥐 등을 다치는대로 잡아먹는다.

“죽지않고 살아남으려면 그저 불 한방울이라도 찾아먹어야 하고 똥에 섞여나온 콩알 한쪽, 강냉이 한톨도 빼내 먹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쥐 한마리, 벌레 한마리도 눈에 띄면 그것이다 음식이었다.

처음에는 끔찍했지만 오래지 않아 나도 무엇이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정말이지 뿔 속에 박힌 콩알도, 돼지 구유 속의 강냉이도, 죽지 않을 것이면 풀도 벌레도 다 먹게 되었으며 먹을 것을 제때 찾아먹는 사람이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왕의 제전 ②, p.218.]

또한 수용자들에게는 봄에 나는 풀이 훌륭한 식량이 된다. 배고픈 수용자들은 봄철이 되어 새싹이 돋아나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독버섯이나 독풀까지 마구 뜯어 먹기 때문에 얼굴이 통통부어고 생하는 사례가 허다하다.⁴⁷⁾

47) 수용자들은 봄철에 나는 “쫄쫄은 독풀이라 해도 죽을 정도의 독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경험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안 혁, 「대왕의 제전 ②」(서울: 도서출판 향비, 1993), p. 290.

〈주 거〉

가옥은 독신중대의 경우 막사에서 집단생활을 하게 되나 가족 세대의 경우 수용자들이 흙벽돌과 판자조각, 거적 등을 이용하여 스스로 집을 지어 피나무껍질로 만든 다다미를 깔고 생활한다. 따라서 가옥은 판자가 썩어 비가 새고, 방바닥과 벽은 흙을 이겨 미장한 관계로 먼지가 많이 난다.

전기는 수용소 자체 발전소를 이용 발전·배전한다. 배전은 각 가구마다 전구 한개씩만 달게하고 저녁 7시부터 12시, 새벽 2시부터 5시까지 두차례 하고 있으나 전기불이 너무 어두워서 글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이다. 수용소 마을에 따라서는 그나마 전기가 없어 관슬로 밥 먹을 시간만 켜는 경우도 있다.

모든 세대가 공동변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수십명씩 줄을 서서 용변을 봐야한다. 화장지라는 것은 이튿조차 없고 마른 강냉이잎, 콩잎, 호박잎, 쉰잎 등을 화장지 대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수용소 마을주변에 나무가 없어 겨우 밥이나 하는 정도로 불을 때기 때문에 방이 매우 춥다. 따라서 밤에는 추위를 쫓느라 몸을 비비며 잠을 못자는 형편이다. 식수는 하천의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서 해결하고 있다.

〈의 복〉

‘가족세대’ 수감자의 경우는 수용기간중 모포 1장과 상하 누빈 동복 1벌을 지급하며, 3년에 한번씩 작업복을 공급한다. 그러나 ‘독신중대’ 수용자는 수용당시 입고 갔던 의복 한벌로 생활한다. 작업을 하기 위한 노동화는 1년 6개월에 1결레, 겨울 솜동화는 5년에 한번 공급하고 양말, 팬티 등 속내의는 일체 지급하지 않는

다. 모든 수용자들은 조각난 천으로 3단까지 기어서 입고 다니며 겨울철에는 얼굴, 팔, 다리 등을 천조각으로 감고 생활한다.

〈각종 질병상태〉

수용자 대부분이 영양실조와 심한 육체노동으로 폐렴, 결핵, 간염, 페라그라병 등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고환염, 치질에 걸린 중환자도 작업장에 동원된다.

“작업 나가 짐체적으로 움직이는 우리를 보면 이견 인간들의 집단이 아닌 짐승의 부리였다. 치질에 걸려 엉치에 손을 대고 엉기적거리는 사람, 고환염이나 헤르페스 때문에 불알을 잡고 가는 사람, 허리를 다쳐 지팡이를 짚고, 걷다가 건방지다고 보위원에게 맞는 사람, 돌이나 나무에 깔려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

[대왕의 제전 ②, p. 222.]

수용소내 진료소는 의사가 없을 뿐 아니라 약도 없다. 진료소에서 중환자로 판명나면 요양소로 보내지게 된다. 요양소에는 결핵 요양소, 간염병동, 정신병동이 있지만, 이들 건물은 단지 격리 수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일 뿐, 주사도 약도 보살핌도 없다.

따라서 요덕수용소의 경우 매년 40~50명씩 병으로 사망한다고 한다.

〈북송교포 수용실태〉

한편, 북송교포들의 수용실태를 보면, 요덕 정치범수용소의 경

우 1974년초 100여세대 600여명이 수용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100~200세대씩 수용되어 왔다. 따라서 혁명화 구역인 구읍·입석 지구 북송교포 마을에는 일가족 수용자 800여세대 5,000여명과 범죄당사자 300여명 등 5,300여명이 집단거주하고 있다.⁴⁸⁾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무엇때문에 수용되었는지 이유조차 모르고 있다. 보위부원들은 이들에게 ‘반쪽발이’라고 냉대, 일반주민보다 더 가혹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같이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북송교포들은 주간에도 조차도 상호방문을 규제받아 통행에 제한을 받는다. 수용소내 마을간 통행에도 통행증이 있어야 하고 저녁 10시부터 통행을 금지시킨다. 야간에는 매일 보위부원과 작업현장 감독 3~4명이 순찰하면서 가택점검을 실시한다. 가택점검시 무단이탈자 등 빠진자가 있을 경우 비상소집(마을의 종을 쳐서)해 수색을 한다. 통행금지시간에 무단 이동하다 순찰대에 적발되면 1개월간 중노동에 처해진다. 3회 이상 무단이동자는 ‘구류장’에 유치한다.

또한 북송교포들은 다른 북한 주민들에 비해 수용소 생활에 쉽게 적응치 못할 뿐만 아니라 굶주림으로 폐렴, 간염 등 질병에 쉽게 걸려 비교적 일찍 사망한다.

〈공개 총살〉

이같이 열악한 수용소 생활을 견디지 못한 도주기도자나 보위원 구타자 등은 재판절차 없이 극형에 처한다. 공개총살자는 매년 15명 정도 된다.

공개총살 대상자 발생시 사형절차는 (i) 우선 1~2일간 구류장

48) 「악마와 지옥 그리고 인간」(월간조선, 1994. 6), p. 690.

에 감금해 둔다. (ii) 통상 사형 당일 아침 10:00경 수용자들 전원을 작업장에 집합시키는 한편 보위부원 2명이 처형대상자를 데리고와 나무말뚝에 가슴과 다리부분을 포박하고 눈부위는 형검으로 가리고 입에는 재갈을 붙인다. 이때 관리소장 등 간부 2~3명이 책상에 앉아 있다. (iii) 사형준비가 완료되면 책상에 앉아 있던 관리소장이 “반역자 000에 대한 처형을 시작하겠다.”고 선포하고 대상자의 죄행에 대해 약 5분간 설명한뒤 “민족을 배반하고 반역의 길을 걸었다. 형법 00조에 의거 총살형에 처한다.”고 선언한다. (iv) 지휘자가 “민족반역자 000를 향하여 싸”하면 보위부원 3명이 자동보총으로 첫번 3발은 눈부위를, 두번째 3발은 가슴부위를, 마지막 3발은 다리부분을 사격, 사살한다. (v) 시체는 가마니에 말아서 미리 대기시켜 놓은 차량에 실어 인근 야산에 매장한다.

〈수용소 출소사 감시실태〉

수용소 출소시에는 수용소내의 생활실상을 일체 말하지 못하도록 서약서를 징구하는 한편 서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재수감 조치한다는 사실을 경고한다. 수용소 출소자는 탄광 또는 집단농장으로 배치되는 것이 원칙이다. 북송교포 또는 뇌물을 제공한 일부사람은 공업지역에 배치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출소자들은 입당은 물론 직업, 여행까지 제한되고 국가보위부의 최우선 감시대상자로 지목된다.

수용소 출소자들은 주택이 공급되지 않아 농장, 기업소내 창고, 휴게실 등을 거소로 이용한다. 미혼자의 경우 이들은 사회적 성분이 적대계층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수용소 출신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출소시 공민층에 ‘000 경비대 농장원’

이라는 별도의 기록이 표기되어 있다. 이는 일반 사회활동에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반 형사범죄를 범할 경우 정치범수용소 출신이라는 이유로 10년이 가중처벌된다.

3. 정치범수용소의 주민구금 장소

정치범 수용소외의 주민구금장소는 (i) 69호 노동교화소(노동갱생원), (ii) 노동교화소, (iii) 교화소, (iv) 149호 대상지역, (v) 정치범교화소, (vi) 49호 보양소 등 6가지 구금장소로 구분된다.

69호 노동교화소(노동갱생원)는 모든 시·군에 설치되어 1개 교화소당 100~200명을 수용하고 있다. 그 대상은 경범죄 위반자, 통행증 미소지자, 노력동원에 나태한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대개 3개월~1년간의 강제노동을 시키는데 이들 강제노동자들은 사회안전부에서 선정하고 아무런 공식기소나 재판절차없이 수용하고 있다.

노동교화소는 도 단위로 2~3개소씩 설치되어 있다. 주로 강간, 강·절도, 집단생활 이탈자, 무단월경자, 정치사상범 자녀 등을 수용한다. 이들은 대개 1~2년의 교화노동을 받은 후 출소된다.

교화소는 도 단위로 1개씩 설치되어 있다. 수용자들은 사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된 자본주의적 지식인, 정치적 반대자 등 '사상이 불온한 자'들이다. 교화소안에서는 일체의 면회나 사식 차입이 금지된다. 이들은 만기출옥후에도 계속적인 감시와 제재를 받는다.

149호 대상지역은 북한이 1958년 '중앙당 집중지도사업'을 통해 소위 반혁명·적대분자를 색출, 약 7만여명을 '내각결정 149호'

에 따라 산간벽지로 추방한 것으로 부터 시작된다.⁴⁹⁾ 그 위치는 평양과 개성으로 부터 50km, 휴전선과 해안선에서 20km이상 떨어진 오지에 정하고 이곳에만 살도록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수용자들은 주로 탄광이나 광산, 채벌장 등에서 중노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칠조망이나 경비초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국의 허락을 받아 타지역의 왕래도 가능하다.

정치범 교화소는 수용기간에 따라 중앙(평양)에 3개소(15~20년 복역자), 지방에 8개소(10~15년 복역자)를 설치·운영한다. 수용대상자는 김일성 부자 간첩비난, 남한방송 청취, 간첩 간첩지원 등 '7호 사건' 해당자들이고 이들은 재판없이 수용된다.

49호 보양소는 2개군에 1개씩 설치·운영하고 있다. 동 보양소는 정신질환자 치료명분으로 종교인, 지식인 등을 집단 수용한다.

49) 김일성은 해방후 이때까지 반대세력을 제거하고 김일성 1인독재체제구축과 개인숭배의 기틀을 마련했다. 따라서 북한은 이시기부터 1인독재를 위한 전 주민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유석렬, 「북한정책론」 (서울: 법문사, 1988), p. 96.

V. 결 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의 법·제도를 비롯한 모든 행위 규범은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당과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조직으로 결속되어야 한다”라는 주체사상의 기본목표에 따라 결정지어 진다. 따라서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 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하고, 그 아래에 노동당의 결정이 있으며, 헌법 등 모든 법률은 노동당 결정보다 하위 규범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북한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며 ‘인민’의 자유와 권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북한 형법은 개인 및 사회의 법의 보호나 피의자 인권보호 수단이 아니며 북한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로 작용, 강제 노역 등 기본권 침해의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여러 차례에 걸친 성분조사사업으로 주민들의 출신성분과 사회성분을 엄격히 심사, 주민들을 3계층 51개 부류로 세분화 하여 취업과 진학은 물론 식량배급, 의료혜택까지도 차별화 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은 당, 국가안전보위부, 사회안전부 등 3중 감시체제로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사상동향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30여 세대로 구성된 인민반은 각종 회의를 통해 각 가정의 비위 사실을 공개비판토록 강요함으로써 주민에 대한 감시 통제를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장치 아래 북한에서는 범법자로 지목된 피의자에 대하여 공정한 재판절차없이 구금하거나 고문 등 비인간적

인 차별이 자행되고 있으며 특히 김일성 부자의 지시나 당정책을 어겼을 때에는 처벌의 가혹함을 주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인민재판식 ‘공개재판’을 실시, 범죄 용의자의 초보적인 인권까지 유린하고 있다.

더 나아가 정치범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처벌은 다른 범죄자들에 비해 더욱 가혹한데 수용소에 들어가는 날 부터 모든 기본적 권리가 박탈당하며, 친지면회, 서신연락이 금지된다. 또한 수용자들은 ‘구역’안에서 자유세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심한 강제노동을 하여야 한다.

이상의 요약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북한은 김일성 부자의 1당 독재세습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적 ‘틀’을 마련하고 정치사업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상교양과 함께 노력동원 그리고 성분분류에 따른 진학·취업 등의 차별화, 철저한 주민감시체계 운영 등으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북한에서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 권리로서의 인권이 원칙적으로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미국 헤리티지 인권보고서(1992. 7)가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동 헤리티지 인권보고서는 “북한에서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사우디 사막에서 홍수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 홍수문제가 존재할 수 없듯이, 인권이 없는 북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란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의 인권실태

통 연 95-2-7

인쇄일 — 1995년 2월 17일

발행일 — 1995년 2월 20일

발행처 — 통일원 통일연수원

서울시 도봉구 수유6동 산 73-3

TEL : 901-7123·4 FAX : 997-0255

표 지 — 메카디자인 그룹

인쇄처 — 한진정판(주)

<비매품>